

○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
약관, 약정서 내 타 약관, 약정서명	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예금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	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세부 내용변경	<p>제 4 조 (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)</p> <p>① 이용자가 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14 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</p> <p>① 이용자는 거래서비스에 필요한 명칭, 대표자, 주소, 이메일주소 등과 인감, 서명을 은행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 2 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 20 조 (약관 변경)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 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,</p>	<p>제 4 조 (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)</p> <p>① 이용자가 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4 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</p> <p>① 이용자는 거래서비스에 필요한 명칭, 대표자, 주소, 이메일주소 등과 인감, 서명을 은행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 2 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0 조 (약관 변경)</p> <p>①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</p>	<p>-문구수정 (통지방법 제한문구 삭제)</p> <p>-문구수정 (신고방법 제한문구 삭제)</p> <p>-문구수정 (신고방법 제한문구 삭제)</p> <p>-변경절차 수정 및 항 세분화</p>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	<p>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간 게시하며,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,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광고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(최소 1 개월 이상 게시)하여야 하며,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광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익이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(제 1 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) 통지한다. 다만,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가입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다. 다만, 제 1 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가입자가 제 3 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</p>	<p>(표준거래약관의 약관변경방식 준용)</p> <p>-문구수정 (통지방법 변경)</p> <p>-항 신설</p> <p>-항 신설</p>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	<p data-bbox="353 368 434 395"><신설></p> <p data-bbox="353 472 701 499">제 21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p> <p data-bbox="353 509 448 536">①(생략)</p> <p data-bbox="353 545 965 742">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, 예금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한다.</p>	<p data-bbox="996 300 1171 327">것으로 본다.</p> <p data-bbox="996 336 1608 395">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996 472 1339 499">제 21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p> <p data-bbox="996 509 1180 536"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996 545 1608 742">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한다.</p>	<p data-bbox="1637 357 1731 384">-항 신설</p> <p data-bbox="1637 576 1731 603">-명칭변경</p>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